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제3조제5항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제3조제4항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2조(이익분배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2조(이익분배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 <p>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/p>